

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(앞쪽)

사업연도		연결자법인명	사업자등록번호
		연결모법인명	사업자등록번호
연결전 연결연도소득 계산	각 사업연도	① 결산서상당기순손익	③⑤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(③①-③②-③③-③④)
	소득조정 금액	② 익금산입	③⑥ 연결세율
		③ 손금산입	③⑦ 연결법인별 산출세액
		④ 차가감 소득금액 (①+②-③)	③⑧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
		⑤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	③⑨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
		⑥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 이월액	④① 가산세액
		⑦ 연결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(④+⑤-⑥)	④② 가감계 (③⑦-③⑧-③⑨+④①)
연결법인별 조정항목 연결 제거	조항목	⑧ 수입배당금액 상당액 익금불산입	남부 할세 액 계 산
		⑨ 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액 손금산입	
		⑩ 기부금 손금불산입액 손금산입	
		⑪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 이월액 손금불산입	
		⑫ 차가감계 (⑦+⑧-⑨-⑩+⑪)	
연결집단내 연결 의 조 정	법인간 거래 손익 의 조 정	⑬ 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상당액 익금불산입	토지 등 의 양 도 수 익 에 대 한 법 인 세 계 산
		⑭ 다른 연결법인에게 지급한 기업업무추진비 상당액 손금불산입	
		⑮-1 직전 사업연도 연결법인 채권에 대해 손금불산입한 대손충당금 상당액 손금산입	
		⑮-2 연결법인간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상당액 손금불산입	
		⑯ 연결법인간 자산양도소득	
		⑰ 연결법인간 자산양도손실	
		⑱ 익금불산입	
연결조정항목 의 배 분 액	연결 조정 항 목 의 배 분 액	⑲ 손금산입	양 도 수 익 에 대 한 법 인 세 계 산
		⑲ 손금산입	
		⑲ 손금산입	
		⑲ 손금산입	
		⑲ 손금산입	
		⑲ 손금산입	
		⑲ 손금산입	
		⑲ 손금산입	
연출 과 세 표 준 및 개 별 귀 속 액	연출 과 세 표 준 및 개 별 귀 속 액	⑳ 차가감계 [⑫-⑬+⑭-(⑮-1)+(⑮-2)-(⑯+⑰+⑱-⑲)]	미 환 류 수 익 에 대 한 법 인 세 계 산
		㉑ 연결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	
		㉒ 연결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	
		㉓ 기부금 조정전 연결소득금액 (㉑-㉒+㉓)	
		㉔ 연결법인의 기부금 손금불산입	
		㉕ 연결법인의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	
		㉖ 연결수정소득금액 (㉓+㉔-㉕)	
	㉗ 소득통산이 제한되는 자산 처분손실손금불산입		
	㉘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 (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)(㉖+㉗)	⑤① 등기자산	
	㉙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(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배분액)	⑤② 미등기자산	
	㉚ 연결이월결손금공제	⑤③ 비과세소득	
	㉛ 비과세소득	⑤④ 과세표준 (⑤①+⑤②-⑤③)	
	㉜ 소득공제액	⑤⑤ 세율	
		⑤⑥ 산출세액	
		⑤⑦ 감면세액	
		⑤⑧ 공제세액	
		⑤⑨ 가산세액	
		⑤⑩ 가감계 (⑤⑤-⑤⑥-⑤⑦+⑤⑧)	
		⑤⑪ 기납부세액	
		⑤⑫ 차감납부할세액 (⑤⑩-⑤⑪)	
		⑤⑬ 과세대상 미환류소득	
		⑤⑭ 세율	
		⑤⑮ 산출세액	
		⑤⑯ 가산세액	
		⑤⑰ 이자상당액	
		⑤⑱ 납부할세액 (⑤⑮+⑤⑯+⑤⑰)	
		⑥② 차감납부할세액계 (⑤⑫+⑤⑱)	
		⑥③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세액 공제	
		⑥④ 납부(환급)할세액 (⑥②-⑥③)	

작성 방법

* 이 서식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집단에서 연결법인별로 작성하는 서식입니다.

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(별지 제76호의6서식) 및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(별지 제76호의7서식)의 각 항목 중 해당 연결법인란에 기재한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.

<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>

1. ㉞ 과세대상 미환류소득란: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(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14호서식)의 ㉞금액(음수인 경우 '0')을 적습니다. 다만, 2017.1.1.부터 2017.12.31.까지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차기환류적립금이 발생한 사업자는 ㉞금액에 종전의 「법인세법」(법률 제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)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(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52호의2서식)의 ㉞금액(음수인 경우 '0')을 합산하여 적습니다.
2. ㉟ 가산세액란: 가산세액계산서(별지 제9호서식)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분의 ㉟가산세액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.
3. ㊱ 이자상당액란: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00조의32제2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종전의 「법인세법 시행령」(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) 제93조제20항에 따른 금액[종전의 「법인세법」(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) 제56조제8항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]을 합산하여 적습니다.